

의안번호	2211668
의 퇴 인	전현희의원
회 답 일	2025.08.18.
추 계 번호	25C39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90억 8,300만원, 2032년 224억 2,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035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영양사 정원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1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임상영양사 배치 현황과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배치 인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임상영양사 (안 제41조의3)	19,083	19,863	20,689	21,540	22,421	103,596	20,7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3 (임상영양사)	○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임상영양사를 두어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3 (임상영양사)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담할 비용을 추계하므로,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임상영양사¹⁾ 배치기준의 변경 시에는 추계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 현행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정원을 두고 있음
 - 본 추계는 이러한 영양사 정원 기준을 준용하여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1명의 임상영양사 배치를 가정하므로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배치 인원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본 추계는 입원시설을 갖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임상영양사 1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제시하므로 본 추계의 결과는 실제보다 클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총 재정소요에서 기존 임상영양사 배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차감해야 하지만, 대상 의료기관(2024년 12월 기준 220개소)의 임상영양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1)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추가로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상영양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추계 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에 임상영양사 채용에 따른 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신규 채용에 따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거나 기관의 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구성
 - 유사사례를 준용한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고 임상영양사 배치 기관 220개소를 곱하여 계산
 - (기본급) 국립중앙의료원의 2024년 기준 임상영양사 1인 평균 기본급과 수당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2024년 기본급 대비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에는 고정수당, 실적수당, 성과상여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기본급 대비 수당 비율은 43.8%임
 - (기관부담금)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의 합으로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 요율 전망치를 곱하여 산출
 -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기관부담 요율은 12.06%에서 13.43%로 전망됨

2) 조직 신설, 대규모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운영비 산출에는 주로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지만, 본 개정안은 각 공공의료기관별로 1명씩 증원하는 소규모 증원이므로 기존 조직의 사무공간, 장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표 2] 대상기관 수 인건비 항목별 단가 추계: 2028~2032년

(단위: 천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대상기관 수	220					-	-
인건비 단가	86,741	90,286	94,041	97,908	101,916	470,892	94,178
-기본급	53,820	55,849	57,994	60,194	62,474	290,331	58,066
-수당	23,583	24,473	25,413	26,377	27,376	127,221	25,444
-기관부담금	9,338	9,965	10,634	11,337	12,066	53,340	10,6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90억 8,300만원, 2032년 224억 2,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035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9,083	19,863	20,689	21,540	22,421	103,596	20,7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